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연월일	2024. . . (제 회)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제출연월일	2024.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고용노동부에 미조직 근로자 등 노동 약자에 대한 정책적, 재정적 지원 강화를 위한 노동정책실의 1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5명(4급 1명, 5급 2명, 6급 1명, 7급 1명)을 증원하고, 중대산업재해 관련 조사·수사를 위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에 6개 과를 신설하면서 정원 6명(6급 6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5급 6명)하며, 이에 필요한 인력 75명(6급 31명, 7급 44명)을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원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2024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고용노동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및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4. 5. 00. ~ 5.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제11조제3항에 제4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8조제2항 후단 중 “48명을”을 “49명을”로 한다.

별표 3 중 총계 “7,061”을 “7,136”으로 하고, 일반직 계 “7,060”을 “7,135”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7,031”을 “7,106”으로 한다.

별표 4 제1호가목에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노동정책실 1개 과	5명
---------------	----

별표 4 제2호나목에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산업안전감독(지방고용노동관서)	75명
----------------------	-----

[illegible]

[별표 3]

고용노동부 소속기관 공무원 정원표(제39조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7,061</u>	<u>7,136</u>	+75
·	·	·	
·	·	·	
일반직 계	<u>7,060</u>	<u>7,135</u>	+75
·	·	·	
·	·	·	
3급 또는 4급 이하	<u>7,031</u>	<u>7,106</u>	+75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	
연 락 처	(044) 205 - 2342